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88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8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5년 3월 31일 김규남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629호)과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642호), 2025년 5월 26일 김기덕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748호)과 같은 날 김경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813호)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장기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헌신을 일군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으로 명시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병역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여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소장미술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‘중장기 미술관자료 수집계획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주요 정책이 결여되었기에, 정책 추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 추가함
(안 제5조제1항제18호 신설)
- 나.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
(안 제21조제2항)
- 다. 소장미술관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
(안 제23조제1항)
- 라.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화함(안 <별표>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(3월~10월) :”을 “(3월~10월)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월) :”을 “2월):”로 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, 소장하기 위하여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미술관자료수집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
2. 소장된 미술관자료의 수집현황 분석
3. 수집전략 구축 및 수집제도 개선 방안
4. 그밖에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3조제1항 중 “있다.”를 “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
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	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(서소문동)
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	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(남현동)
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	서울 노원구 동일로 1238 (중계동)
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	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-1 (상암동)
서울시립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	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-1 (창신동)
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	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(평창동)
서울시립 사진미술관	서울 도봉구 마들로13길 68 (창동)
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	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9길 53 (독산동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9조(무료 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	제9조(무료 관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12. ~ 17. (생략)	12. ~ 17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
18. · 19. (생략)	19. · 20. (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용기간)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2조(사용기간) ① ----- ----- -----.
1. 하절기(3월~10월) : 09:00부터 20:00까지	1. ----(3월~10월): ----- -----
2. 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: 09:00부터 19:00까지	2. ----- 2월): ---- -----

②・③ (생략)

제21조(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수립)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, 소장하기 위하여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23조(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) ①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, 소장하기 위하여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미술관자료수집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
2. 소장된 미술관자료의 수집현황 분석
3. 수집전략 구축 및 수집제도 개선 방안
4. 그밖에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3조(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) ①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